

地方自治法 改正 建議案

1. 地方議會議員이 閉會중에도 委員會 參席時 日費 및 旅費를 支給할 수 있도록 하며, 特定한 議政活動을 위하여 特別經費를 支給할 수 있도록 함 (案 第32條)
2. 地方議會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を 支給할 수 있도록 함 (案 第32條의 2)

地方議會가 監査할 수 있는 事務의 範圍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와 地方自治團體가 經費를 負擔하는 事務를 包含하도록 하고,

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國家事務와 上級 地方自治團體事務 (市·道事務)

에 대하여 國會 및 市·道議會는 그 監査를 각각 當該 市·道議會와 市·郡 및 自治區議會로 하도록 하며,

行政事務監査 및 調查를 하는 本會議, 常任委員會와 調查委員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補助機關이나 그 事務에 관계되는

사람들을 出席케 하여 證言하거나 意見開陳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, 關係機關이나 團體등에 대하여 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鑑定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도록 함

(案 第36條)

4. 地方議會에서의 證言, 鑑定 등에 관한 節次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함 (案 第36條의 2)
5.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들이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는 때에 出席·答辯하는 境遇,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議長 또는 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·答辯하도록 함. (案 第37條)

6. 定期會 集會日을 市·道議會는 11月 20日에서 11月 10日로, 市·郡 및 自治區議會는 11月 25日에서 11月 20日로 하도록 함 (案 第38條)
7. 地方議會 選舉後 最初의 臨時會는 選舉日로 부터 25日이내에 召集하도록 한 規定을 議員任期, 開始日로 부터 25日 이내에 召集하도록 함 (案 第39條)
8. 市·道議會의 境遇 定期會의 會期를 35日에서 40日 이내로 하고, 年間 會議總日數도 市·道議會는 現行 100日에서 120日, 市·郡 및 自治區議會는 現行 60日에서 80日로 延長함 (案 第41條)
9. 市·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를 市·道議會의 境遇와 同一하게 條例로 定하도록 함 (第50條 第2項 但書 削除)
10.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定員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함 (案 第103條)
11. 地方自治團體의 直屬機關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도록 함 (案 第104條)
12. 地方議會 事務職員은 當該 地方議會 議長이 任命하도록 함.
13.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·道는 會計年度 開始 50日前까지 市·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 開始 40日前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하도록 함 (案 第118條)
14. 地方自治團體는 그 所管 事務의 範圍안에서 必要한 때에는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을 條例로 設立할 수 있도록 함 (案 第138條)
15. 內務部長官 또는 市·道知事의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關한 監査規定을 削除함 (案 第158條 削除)
16. 地方議會에서 再議決된 事項에 對하여 大法院에 訴를 提起한 境遇 大法院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效力이 停止되지 아니 하도록 함 (案 第159條)

17. 法 第15條 規定인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 賦課에 關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를 削除하고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에 違背되지 않는 한 그 事務에 關하여 條例로 制定할 수 있도록 함
18. 法 第120條 ②의 단서 條項으로 同法 第125條에 依한 決算 承認時 豫備費를 包含하여 承認한 때에는 이에 加함한다를 新設